##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2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오세희・박지원・박수현

박희승 • 백승아 • 정진욱

이병진 • 이광희 • 김한규

김주영 · 허성무 · 전진숙

김남근 · 김 윤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 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 법률 제 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 중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를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합회가 제66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④ (생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	⑤ <u>연</u>		
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u>수행할 때</u> 필요한 비용을 예산	<u>사업 수행에</u>		
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필요</u>	⑦ <u>연합</u>		
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u>있다</u> . <u>&lt;후단 신설&gt;</u>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lt;신 설&gt;</u>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		
	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		
	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u>⑧</u> · <u>⑨</u> (생 략)	<u>⑨</u> ・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72조(벌칙) (생 략)	제72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연합회가 제66조제8항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